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정기검사에 대해서”를 “정기검사인 경우와 직전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한 경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8조(정기검사) ① · ② (생 략)	제88조(정기검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 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, 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 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 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. 다만, 최 초의 <u>정기검사에 대해서는</u> 그러 하지 아니하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정기검사인 경우와 직전</u> <u>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</u> <u>한 경우에</u>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	
연 락 처	(02) 397 - 7332